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23

제안연월일 : 2023. 5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“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” 운영에 대하여 외국어 전문 교육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을 추진하여 영어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 및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「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제5조 및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“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”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
-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
- 평창군-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업무 협약 (2022. 8. 24.)
- 교육부 “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”

○ 추진 필요성

- 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외대 위탁을 통해 효과적인 체험형 어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육성
- 방학 중 사교육비 절감 및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○ 범　위 : 방학 중 청소년 체험형 영어프로그램 운영

○ 기　간 : 여름방학 중 9박10일

○ 대　상 : 50명 (초 5~6학년 30명, 중 1~2학년 20명)

○ 장　소 :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

라. 민간위탁기간 : 위·수탁협약일 ~ 2025. 12. 31.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자　격

- 평창군과 협정약정(MOU)을 체결한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
-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어학캠프 운영 가능
-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·창의프로그램 무상 제공

○ 선　정 : 한국외국어대학교

- 평창군-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교육협력 증대 업무협약 체결
- 65년의 외국어 전문 교육 노하우를 보유한 위탁 어학교육 기관
- 청소년 HAFS 캠프(용인외대부고) 무상 운영 (2023. 1월)
- 교육부 지침 적용 (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)

※ 교육부「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」
- 지자체는 협정체결(MOU)로 지역에 관계없이 수탁기관(학교)을 정하여 학교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 가능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민간위탁금 90,000천원(군비)

- 교육비 : 1,900천원/인 (보조금 1,700, 자부담 200)
  ※ 교육비 산정근거: 한국외대 영어체험교실 운영계획
- 참가자 간식비, 차량지원 등 기타 소요비용 : 5,000천원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
-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 요구로 위탁 필요

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 및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
- 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갖춘 한국외국어대학교 위탁을 통해 교육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어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

○ 경제적 효율성

- 중단기 합숙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(90%) 보조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
-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학교를 활용하여 양질의 실용언어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어학연수 효과 기대 및 경제활성화 기여

○ 민간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
- 전문인력 보유, 체계적 프로그램, 차별화된 수행역량 활용
-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

○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에 반영
- 참가자 및 학부모 설문조사·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성과관리

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검증된 학교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

아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추진현황

- 평창군-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업무협약 : 2022. 8. 24.
- 2023년 용인외대부고 동계 사회공헌 HAFS캠프 : 2023. 1월

○ 관련자료

- 평창군, 학교법인 동원육영회
  상호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1부
- 교육부 “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” 1부

○ 관계법령

-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
-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~제5조

관련자료 첨부

□ 평창군,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업무협약서

- 평창군,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-

상호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평창군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상호발전과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미래 지향적인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평창군과 동원육영회의 상호 발전 및 협력 방안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기본방침) 본 협약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.

① 관계 법령과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한다.

② 협력사항 실천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며, 세부이행은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상호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평창군의 협력사항

가. 연수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제반사항 지원

나. 연수시설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기반시설 등 지원

② 동원육영회의 협력사항

가. 주민 교양프로그램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발전

나.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적교류 추진

다. 평창군 내 학생 및 교직원 연수시설 건립 추진

③ 공동협력사항

가. 지역의 교육 및 문화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

나.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(지역 농특산물 우선 구매 등)

다. 사회공헌활동 가치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전개

제4조(지식재산의 보호)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지식재산을 보호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및 업무상 비밀은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효력 및 유효기간)

① 협약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변경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5년간 유효하다.

② 협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제4조(지식재산의 보호) 및 제5조(비밀유지)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.

제7조(법적구속력) 협약서는 제4조(지식재산의 보호) 및 제5조(비밀유지) 조항을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.

제8조(협약서의 해석 등)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.

본 협약은 평창군수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이 협약서 2부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8월 24일

평창군수 심 재 국

학교법인 동원육영회
이사장 김 종 철

□ 교육부 「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」

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

1 추진배경

□ **관계부처 합동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**('13.12.13)

△ 초·중·고·대학 등의 인적·물적 학교시설을 활용,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

- **국가·지자체·교육청과 학교가 협정약정(MOU) 체결 및 위탁**을 통해 운영

* 과도한 비용 요구 제한,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 지원 방안 포함

○ **국내학교**를 활용한 **어학캠프 운영**을 통해 **경제 활성화 기여**

-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유학을 희망하는 **외국학생**을 **국내학교**로 **유치**해서 **어학연수 기회 제공**

- **국내학생**의 방학 중 **해외 어학연수 수요**를 국내학교에서 **흡수**해서 **외화 유출 최소화**

□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 허용에 따른 **세부사항**을 **안내**해서 **학교시설 이용 어학캠프 운영**의 **공공성** 확보

2 어학캠프 운영기준

□ **운영 허용 및 조건**

○ **(운영방식) 국가·지자체·교육청이 학교에 위탁(협정약정)**을 통해 **학교의 인적·물적 자원**을 **활용**해서 방학 중 어학캠프 **운영**

- 위탁기관의 장과 운영기관의 장이 협정을 체결하되, 위탁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 학생을 모집 운영

※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비영리 또는 교육기부 등의 목적으로 참여 가능(협력기관으로 참여)

※ 위탁기관이 지역에 관계없이 수탁기관(학교)을 결정해서 위탁 가능

△ 위탁기관 : 국가, 지자체(광역, 기초), 교육청(시·도, 지원청)의 장
△ 운영기관 : 위탁받은 학교의 장
- 운영가능 학교 :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,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
※ 미인가 학교, 유치원 등 운영 불가

○ **(운영내용)**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**체험중심**의 **캠프운영**을 **원칙**으로 하되, 학교 교과를 변형한 수업을 실시하는 **입시준비 과정 운영**은 **불가**

※ 학교 교과를 변형한 입시준비 등의 과정 운영 불가(예: 토익, SAT, 문제풀이 등)

- 체험학습 대비 **시설** 등 **특별점검** 및 **사전 안전교육 실시**

□ **협정약정(MOU) 반영 내용**

○ 운영기간, 프로그램 운영, 참가대상자, 비용 징수(저소득층연수비 감면 포함), 교습장소, 학생안전 대책 등 캠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**구체적으로 적시**

- 학습자에게 **개별적 징수**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**합리적 비용**을 **징수**

※ 비용 산정시 소재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참고

- **비용 반환기준**은 학원법 시행령 [별표4]에 따른 **반환기준**을 **적용**하되, 부득이한 경우 **위·수탁기관간 협의**해서 결정

□ **운영 기간 및 회계관리**

○ **(운영기간)** 개별 학교의 **방학기간에 한하며** 본교생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**운영**

○ **(회계 관리) 어학캠프 수입금**은 **별도 계좌**로 **관리**하되, 정산 후 **수익금**은 **학교운영비**로 **활용**

3 행정사항

○ 운영 시기 : **2014학년도 여름방학부터**

관계법령 발췌

□ 평생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
5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)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,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.

1.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
2.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
3.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
4.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

제5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군수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·시설·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